

축산물등급화 거래 추진실적 및 결과분석



고경철 기획과장
(축협축산물등급판정소)

1. 서론

'92년 서울 3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지도에 의한 시범사업형태로 등급판정을 실시해 오다가 농림수산부고시 제94-63('94.11.30)호에 의해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과 실시시기가 고시됨에 따라 고시지역내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만 거래토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서울·부산·제주지역은 '95년 2월 6일부터, 4대 광역시 지역은 '95년 6월 1일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돼지의 도체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표1).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 및 실시시기가 고시됨

〈표1〉 축산물등급화 거래고시지역

년도	지역	추진형태	작업장수	비고
'92.7	서울 3개 도매시장	시범사업	3개소	
'93.7	서울 반출작업장	〃	38	
'94.7	부산, 제주	〃	41	
'95.2	서울, 부산, 제주	의무시행	42	등급판정시행 도축장지정
'95.6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	62	

에 따라 등급판정사업이 확대되어서 '95년 12월 말 현재 축산물등급판정 시행도축장이 서울을 비롯한 5대 광역시, 제주 및 반출지역의 62개로 늘어났고 '95년도에 등급판정된 돼지도체는 총 4,998,905두였다.

본고에서는 '95년도 2월 6일 이후 해당지역에서 의무시행되었던 돼지도체 등급판정업무 추진 현황과 등급판정 결과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2. 돼지도체 등급판정 추진실적

'95년도에는 4,998,905두를 등급판정하였는데 '94년 판정대비 181%로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전국 도축두수대비 49%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94년 28%보다 21%가 증가한 수치이다(표2). 판정두수에 대한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A등급은 6.3%, B등급은 30.4%, C등급은 40.1%, D등급은 16.8%, E등급(등외급)은 6.4%이었다. 또한 우수축에 해당하는 A,B등급의 출현율도 36.7%로써 '94년 33.6%보다 3.1% 증가하였다(표 2).

'95년도 등급판정된 돼지도체 4,998,905두에

〈표2〉 연도별 등급판정 실적

기간	판정두수 (두)	전국도축두수 대비 등급판정율	등급별 출현율(%)				
			A	B	C	D	E
'92.7.1~12.31	481,336	9%	4.7	38.8	42.0	14.5	-
'93.1.1~12.31	1,807,087	19	5.6	30.8	39.9	18.6	5.2
'94.1.1~12.31	2,761,314	28	5.2	28.4	40.8	19.6	6.0
'95.1.1~12.31	4,998,905	49	6.3	30.4	40.1	16.8	6.4

대한 성비는 암돼지 51.6%, 수돼지 43.6%, 거세돈 4.8%이었다. 성별 및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암돼지에서는 A등급이 11.7%, B등급이 49.3%, C등급이 23.0%, D등급이 6.1%, E등급이 9.9% 출현했으며, 수돼지에서는 B등급이 7.1%, C등급이 60.0%, D등급이 30.0%, E등급이 2.9% 출현하였고, 거세돈에서는 A등급이 4.3%, B등급이 39.3%, C등급이 43.7%, D등급이 12.4%, E등급이 0.3% 출현하였다〈표3〉.

〈표3〉 성별, 등급별 출현두수 및 출현율(전국: '95.1.1~12.31)

(단위: 두,%)

구분	계	A	B	C	D	E
암	2,580,073 (100.0)	302,495 (11.7)	1,272,769 (49.3)	592,301 (23.0)	158,366 (6.1)	254,142 (9.9)
수	2,177,386 (100.0)	- (-)	154,424 (7.1)	1,305,284 (60.0)	653,573 (30.0)	64,105 (2.9)
거세	241,446 (100.0)	10,450 (4.3)	94,773 (39.3)	105,495 (43.7)	29,995 (12.4)	733 (0.3)
계	4,998,905 (100.0)	312,945 (6.3)	1,521,966 (30.4)	2,003,080 (40.1)	841,934 (16.8)	318,980 (6.4)

주) ()는 출현율임.

'95년도에 판정된 돼지도체 4,998,905두중 경매거래된 도체와 비경매거래된 도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및 5대광역시, 제주, 축협나주공판장, 축협고령공판장등 9개 지역에서 판정되어 경매된 두수는 3,152,428두로서 전체 판정두수의 63.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4대 광역시지역은 '95년 6월부터 판정을 실시하여 '96년에는 경매지역에서 판정하여 거래되는 도체의 비율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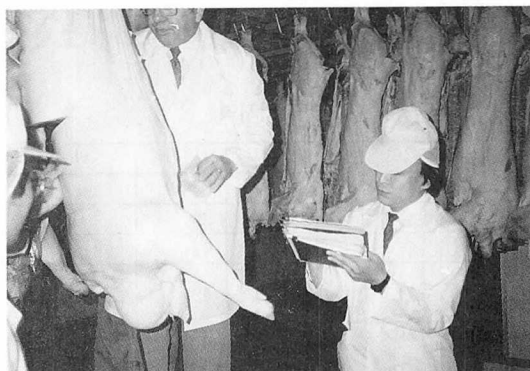
〈표4〉 지역별 경매거래 및 등급판정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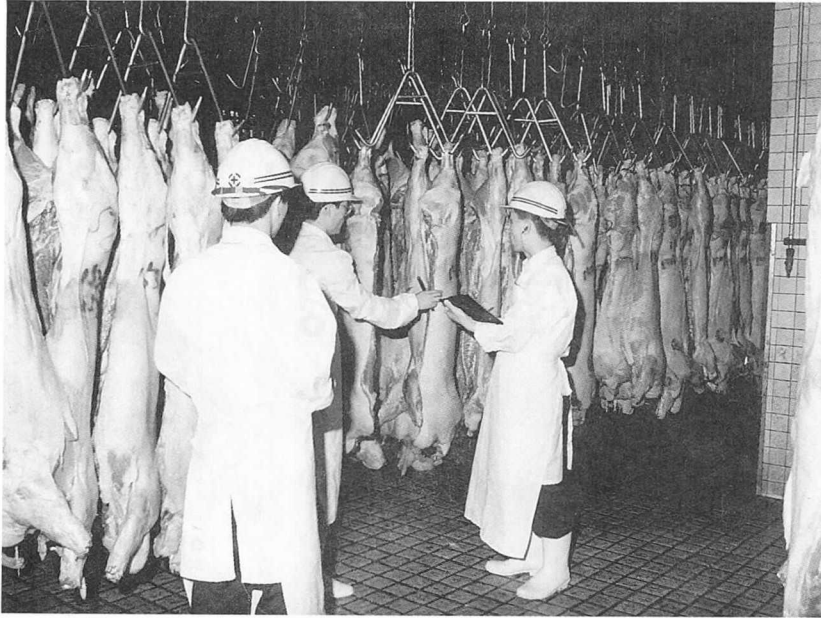
(단위: 두,%)

구분	판정두수(두)	전체판정두수 대비 판정율(%)	
경매	서울	1,539,877	30.8
	부산	602,659	12.1
	대구	174,515	3.5
	인천	181,771	3.6
	광주	113,465	2.3
	대전	68,519	1.4
	제주	182,698	3.6
	축협나주	164,422	3.3
	축협고령	124,502	2.5
	소계	3,152,428	63.1
비경매	경기	747,214	14.9
	강원	69,329	1.4
	충북	222,948	4.4
	충남	239,585	4.8
	전북	76,523	1.5
	전남	28,634	0.6
	경북	128,149	2.6
	경남	334,095	6.7
	소계	1,846,477	36.9
	계	4,998,905	100.0

증가할 것이다.

비경매지역에서 판정된 도체는 1,846,477두로서 전체 판정두수의 36.9%를 차지하였는데 앞으로 비경매지역에서도 등급별 가격정산을 희망하고 있어 경매는 아니지만 등급별로 가격형성이 이루어져 등급별 가격정산은 양돈농가의 고급육 생산기술향상을 촉진시키리라고 예상된다.





〈표5〉 축협서울공판장 성별·등급별 경락가격 비율('95. 1.1~12.31)

(단위: %, 원)

성 별	등 급	년 도 별			
		'92	'93	'94	'95
암	A	111.8	113.4	113.6	116.1
	B	106.4	108.8	107.8	109.5
	C	100.0	100.0	100.0	100.0
	D	77.1	89.9	91.5	93.3
	E	—	62.0	63.2	60.2
	기준가격	2,100	2,209	2,165	2,344
수	A	117.8	—	—	—
	B	108.2	100.3	102.6	105.8
	C	100.0	100.0	100.0	100.0
	D	92.4	92.9	94.5	92.7
	E	—	68.2	62.9	66.2
	기준가격	1,897	2,137	2,143	2,299
거세	A	108.2	110.9	112.9	112.9
	B	101.8	108.2	107.7	107.1
	C	100.0	100.0	100.0	100.0
	D	92.6	84.9	86.8	90.8
	E	—	80.1	63.4	80.0
	기준가격	1,900	2,040	2,002	2,202
전체	A	116.6	116.0	114.5	117.6
	B	108.6	110.0	107.7	110.1
	C	100.0	100.0	100.0	100.0
	D	84.8	91.9	93.6	92.6
	E	—	64.3	63.6	61.9
	기준가격	1,988	2,159	2,147	2,313

주) 기준가격은 성별 C등급 평균경락가격임.

축산물등급제 실시이후 축협서울공판장에서 등급판정된 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급간에 경락가격 비율이 일정한 폭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암돼지의 경우 A,B등급 판정도체의 경락가격은 C등급 대비 2%정도 가격차이가 더 났다. E등급의 가격 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D등급 돼지의 경락가격은 점차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돼지의 경우에도 B등급 돼지 경락가격 비율은 93년 이래 매년 2~3%씩 상승되었으나 D,E등급 돼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세돼지의 경우 A,B,C등급 돼지는 큰 변동이 보이지 않았으나 D등급은 2%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와같이 축산물등급제에 의하여 돼지도체의 경락가격 형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지역에서 거래되는 돼지도체는 63.1%로서 이들 작업장이 서울 및 광역시의 도매시장이거나 축협공판장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등급별 가격형성이 이루어져 축산물등급제의 정착이 가속화될 것이다.